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2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정준호 · 서영교 · 조인철
백선희 · 장종태 · 박균택
이정문 · 김준혁 · 양부남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경기단체 회장의 선출 등) ① 경기단체의 임원 중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투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3(경기단체 회장의 선출 등) ① 경기단체의 임원 중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u> <u>②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투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u>③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